

대구광역시달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5-26
----------	-------

제출년월일 : 95. 7.

제 출 자 : 달서구청장

(기획감사실)

1. 제안이유

-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94. 12. 31)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코자 함.

2. 근거법령

-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10조

3. 주요골자

- 제3조 제1항 제1호중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을 “재산등록사항”으로 개정
- 공직자윤리법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중 “제5항”이 신설됨에 따라
 - 제3조 제1항 제2호중 “법 제8조 제11항”을 “법 제8조 제12항”으로
 - 제6조 제2항 제1호중 “법 제8조 제 6항”을 “법 제8조 제 7항”으로
“법 제8조 제11항”을 “법 제8조 제12항”으로 개정

4.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대구광역시달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중 “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을 “재산등록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중 “법 제8조 제11항”을 “법 제8조 제12항”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제1호중 “법 제8조 제6항”을 “법 제8조 제7항”으로, “법 제8조 제11항”을 “법 제8조 제1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p> <p>1. <u>법 제10조의 제1항의 규정하는 재산 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u> 심사과 그 결과의 처리</p> <p>2. <u>법 제8조의 제11항 후단의 규정</u>에 의한 승인</p> <p>3~4<생략></p> <p>② <생략></p> <p>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① <생략></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1. <u>법 제8조 제6항의 규정</u>에 의한 조사 의뢰 및 <u>법 제8조 제11항의 규정</u>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p> <p>2~4<생략></p> <p>③, ④<생략></p>	<p>제3조(기능) ①</p> <p>.....</p> <p>1. <u>재산등록사항</u>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p> <p>2. <u>법 제8조의 제12항 후단의 규정</u>에 의한 승인</p> <p>3~4<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p> <p>.....</p> <p>.....</p> <p>.....</p> <p>.....</p> <p>.....</p> <p>.....</p> <p>1. <u>법 제8조 제7항의 규정</u>에 의한 조사 의뢰 및 <u>법 제8조 제12항의 규정</u>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p> <p>2~4<현행과 같음></p> <p>③, ④<현행과 같음></p>			

대구광역시달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정 1993. 8. 12 조례 제26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1. 3인의 위원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 2. 2인의 위원은 의회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 1.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한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 2. 법 제8조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 3.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 1. 소속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의회의원 및 의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에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8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공직자윤리법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의 준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의 각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은 “소속기관”으로 “등록기관(법 제5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12호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등록기관(법 제5조제1항제8호·제9호 및 제1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본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3년8월12일부터 시행한다.